

**별첨4****채용예정 직급상당 경력·자격 기준****□ 인사관리요강 [별표1] 채용예정 직급상당 경력·자격 기준**

구 분	내 용
종합직 1급	1.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4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.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.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력,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종합직 2급	1.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4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.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.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력,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종합직 3급	1.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5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.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.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력,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종합직 4급	1.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5급 내지 6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.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.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. 감정평가사 등 자격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.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경력,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종합직 5급	1.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6급 내지 7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.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. 석사학위 및 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. 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5.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경력,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- \* 주) 1.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상 법인의 직급은 부동산원 직급과 동일·유사한 경우에 한하며, 상이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직급을 적용할 수 있다.  
2. 공무원 경력의 직급기준은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년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.